

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

(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·기재 예시)

※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하고,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받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 위임자가 사망한 뒤에 대리 발급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.

위임자	성명	_____	주민등록번호	_____		
	국적	_____	주소	_____		
	신분증종류	_____	용도	_____	발급통수	_____통
대리인	성명	_____	주민등록번호	_____		
	주소	_____			관계	_____
위임사유		_____				

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.

20____년 ____월 ____일

[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,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]

성명	_____	주민등록번호	_____		
주소	_____				
관계	_____	발급통수	_____	인감 또는 서명 ※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	_____

(성명: _____)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. 20 ____년 ____월 ____일

위의 위임(동의) 사실을 확인합니다. 20 ____년 ____월 ____일

[] 재외공관(영사관) (서명 또는 인) [] 수감기관(교도관) 직인,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확인	부동산종류	_____
	부동산소재지	_____

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. 20 ____년 ____월 ____일 세무서장 [직인]

※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위임장은 위임자가 자필로 쓴 원본이어야 합니다. 이 작성본은 칸마다 들어갈 내용을 보여 주는 기재 예시이니,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정부 서식 원본(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)을 출력해 위임자가 직접 옮겨 쓰세요.